

**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·기술기준**(제17조제6호의2 관련)

1.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천연가스 선박 충전

이 기준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는 선박 연료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가. 시설기준

- 1) 충전장소의 중심(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)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. 다만,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2)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자동차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하고, 2대의 자동차가 진입, 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
- 3)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자동차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"천연가스 선박 충전장소"라는 표시를 할 것
- 4)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"충전 중 엔진정지"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
- 5)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
- 6) 긴급사태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, 충전작업 전·중·후의 작업 상황을 선박 내의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구축할 것
- 7)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,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

나. 기술 기준

- 1)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하며,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할 것
- 2)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,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
- 3) 충전작업 전에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조치를 할 것
- 4)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밧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 상태를 확인할 것
- 5) 충전 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
- 6)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외의 자의 출입

을 금할 것

- 7) 그 밖의 안전유지기준, 충전 기준 및 점검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4호 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용할 것. 이 경우 "자동차 용기"는 "선박 용기 또는 탱크"로 보고, "액화도시가스자동차"는 "천연가스 선박"으로 본다.